제47조의2 중 "별표"를 "별표 2"로 한다.

별표를 별표 2로 하고,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 보

이 영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(제30조의2제1항 관련)

해당연도	비율(%)
1. 2018년도	18.0
2. 2019년도	21.0
3. 2020년도	24.0
4. 2021년도	27.0
5. 2022년도 이후	30.0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 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공공기관 지 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(법률 제14937호, 2017. 10. 24. 공 포, 2018. 1. 25. 시행)됨에 따라,

지역인재 채용제도의 단계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18년도에는 18퍼센트 이 상으로 정하되 5년간 이를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, 지역인재 채용제도 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채용시험의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 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시 卫

◉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-2호

전파법 제9조(주파수분배)에 따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-13호, 2017. 9. 1.)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8년 1월 23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개정

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주파수분배표의 20.1~23.55대, 23.55~25.25대, 25.25~29.5대 대역의 한국 주파수대별 용도와 국내 주파 수분배표 주석 K164 및 K176C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0.1-23.55 GHz

	국 제	
(1)	(2)	(3)
제 1 지 역	제 2 지 역	제 3 지 역
21.2-21.4	지구탐사위성(수동) 고정 이동 우주연구(수동)	
21.4-22 방송위성 5.208B 고정 이동	21.4-22 고정 이동	21.4-22 방송위성 5.208B 고정 이동
5.530A 5.530B 5.530D	5.530A	5.530A 5.530B 5.530D 5.531
22-22.21	고정 이동(항공이동 제외)	
	5.149	
22.21-22.5	지구탐사위성(수동) 고정 이동(항공이동 제외) 전파천문 우주연구(수동)	
	5.149 5.532	
22.5-22.55	고정 이동	
22.55-23.15	고정 위성상호간 5.338A 이동 우주연구(지구대우주) 5.149	5.532A
23.15-23.55	고정 위성상호간 5.338A 이동	
	5.149	

한	국
(4)	(5)
주파수대별 분배	용 도 등
21.2-21.4 지구탐사위성(수동) 고정 이동 우주연구(수동)	
21.4-22 방송위성 5.208B 고정 이동	
5.530A 5.530B 5.530D	
22-22.21 고정 이동(항공이동 제외)	비허가 무선기기/용도 미지정 K176C
5.149	
22.21-22.5 지구탐사위성(수동) 고정 이동(항공이동 제외) 전파천문 우주연구(수동)	22.35대(실험국용) K30 비허가 무선기기/용도 미지정 K176C
5.149 5.532	
22.5-22.55 고정 이동	비허가 무선기기/용도 미지정 K176C
22.55-23.1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우주연구(지구대우주) 5.532A	비허가 무선기기/용도 미지정 K176C
5.149	
23.15-23.55 고정 위성상호간 5.338A 이동	비허가 무선기기/용도 미지정 K176C
22.21-22.5 지구탐사위성(수동) 고정 이동(항공이동 제외) 전파천문 우주연구(수동) 5.149 5.532 22.5-22.55 고정 이동 22.55-23.1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7주연구(지구대우주) 5.532A 5.149 23.15-23.55 고정 위성상호간 5.338A	비허가 무선기기/용: 미지정 K176C 비허가 무선기기/용: 미지정 K176C 비허가 무선기기/용: 미지정 K176C

23.55-25.25 GHz

	국 제	
(1)	(2)	(3)
제 1 지 역	제 2 지 역	제 3 지 역
23.55-23.6	고정 이동	
23.6-24	지구탐사위성(수동) 전파천문 우주연구(수동)	
	5.340	
24-24.05	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	
	5.150	

한	국
(4)	(5)
주파수대별 분배	용 도 등
23.55-23.6 고정 이동	비허가 무선기기/용도 미지정 K176C
23.6-24 지구탐사위성(수동) 전파천문 우주연구(수동)	
5.340	
24-24.05 아마추어 아마추어위성	24.025때(아마추어국 지정주파수)
5.150	K40

24.05-24.25	무선탐지 아마추어 지구탐사위성(능동)	
24.25-24.45 고 ਰ	5.150 24.25-24.45 무선항행	24.25-24.45 고정 이동 무선항행
24.45-24.65 고정 위성상호간	24.45-24.65 위성상호간 무선항행	24.45-24.6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무선항행
24.65-24.75 고정 위성상호간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	5.533 24.65-24.75 위성상호간 무선탐지위성 (지구대우주)	5.533 24.65-24.7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
고정위성(지구대우주) 5.532B 24.75-25.25 고정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	24.75-25.25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 5.535	고정위성(지구대우주) 5.532B 5.533 24.75-25.25 고정 고정위성(지구대우주)
5.532B		5.535 이동

	2010.	1. 20.(-)— (-)
24.05-24.25 무선탐지 <u>지구탐사위</u> /	<u>성(</u> 능동)	24.125㎝(ISM 설비) K40 물체감지센서용 K40A
5.150		
24.25-24.45 고정 이동		특정소출력(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) K37G
24.45-24.6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		특정소출력(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) K37G
5.533		
24.65-24.75 고정 위성상호간 이동 고정위성(지 5.532B	구대우주)	특정소출력(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) K37G
5.533		
24.75-25.25 고정 고정위성(지구 이동	'대우주) 5.535	특정소출력(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) K37G

25.25 - 29.5 GHz

	국 제	
(1)	(2)	(3)
제 1 지 역	제 2 지 역	제 3 지 역
25.25-25.5	고정 위성상호간 5.536 이동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	<u> 성(</u> 지구대우주)
25.5-27	지구탐사위성(우주대지구) 5.536B 고정 위성상호간 5.536 이동 우주연구(우주대지구) 5.636C 표준주파수 및 시보위성(지구대우주)	
	5.536A	

한	국
(4)	(5)
주파수대별 분배	용 도 등
25.25-25.5 고정 위성상호간 5.536 이동 표준주 <u>파수 및 시보위</u> <u>성(</u> 지구대우주)	특정소출력(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) K37G
25.5-27 지구탐사위성(우주대 지구) 5.536B 고정 이동 위성상호간 5.536	특정소출력(차량충돌 방지레이다용) K37G
5.536A	

K164

10.5~11.76k, 12.0~12.26k, 17.7~19.76k, 및 36.5~42.56k의 주파수대역은 무선전송링크용으로 사용한다. K176C

262~264Mb, 22~23.66b, 57~666b, 122~1236b, 244~2466b의 주파수 대역은 비허가 무선기기/용도 미지정으로 사용한다.

부칙

보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.2~23.6趾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,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(21.2~21.625 趾 및 22.4~22.825 趾)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.

●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-3호

「전파법」 제45조(기술기준), 「전파법 시행령」 제25조(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)에 따라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9호, 2017, 9, 1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8년 1월 23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

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표의 주파수대역 중 "24~26.50比"를 "22~23.60比"로 변경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.2~23.60kk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,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(21.2~21.625 0kk 및 22.4~22.825 0kk)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.

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-4호

전파법 제45조(기술기준)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(세부기준 등의 고시)제2항제2호에 따른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-10호, 2017.9.1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8년 1월 23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6호가목 후단 중 "1% 이하일 것."을 "1% 이하일 것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"수동송신의 경우: 전파발사를 시작하여 90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사를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(다만, 자동차의 주차 장치는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)"을 "수동송신의 경우: 자동차의 주차 장치는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"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24~26.50比"을 "22~23.60比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고시 시행 전에 개설된 21.2~23.6에 대역의 무선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, 자가통신업무용으로 기 사용 중인 주파수(21.2~21.625 础 및 22.4~22.825 础)은 무선국 허가일 까지만 사용을 허용한다.